

『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2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지원국장 이창형

나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의 업종 다각화 및 자생적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구미 지역 중소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주도형 R&D추진 필요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2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출연금액 : 0.9억원
- (3) 사업기간 : 2022. 1. 1. ~12. 31.
- (4) 사업내용 : 전주기 연구개발사업 및 특허출원 지원, 기술교류회, 수요맞춤형 세미나 참가 지원 등
- (5) 출연근거
 - 법 령 : 지방재정법(제18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20조)
 - 조 례 :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(제4조, 제5조),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4조)

나. 주요 사업

- (1) 개방형 R&D과제 기획 : 지역 유망기업 발굴을 통한 국가 R&D 사업발굴수주 및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
- (2) 완제품 제작 지원 : 아이디어의 상품화,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 향상
- (3) 기술교류회 운영 :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기업들의 자발적 연구 개발 협력체계 구축, 공동전시 등을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지원
- (4) 신기술·정책동향 제공 :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 및 핵심 산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신산업 발굴 및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대기업에 비해 제한적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
- (2) 중소기업의 수직적·수평적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일괄지원 체계 구축과 협업 R&D 과제기획 등을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
- (3) 지역의 산학연관 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식허브 기능과 구미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사무국, 경북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혁신 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 지원

라. 추진 실적

(1) R&D과제 기획(2건)

- * 압축강도 12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비굴착 대구경하수 관거 갱생공법, 3D 프린터용 에폭시 수지를 함침한 연속 탄소 섬유 복합 필라멘트 개발

(2) 완제품 제작 지원(4건)

- * 전동 유틸리티 카에 적용되는 적재함의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, LCoS가 적용된 투과형 옵틱 엔진 개발,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력 향상 콘텐츠 기반의 VR 디바이스 개발, AR 글래스 스마트팩토리 설비 유지보수 제품 개발

(3) 기술교류회(1회)

* 제2회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기술교류회 - 지능형 디지털분야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3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4조, 제5조
- (4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,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○ 본 「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」은

- 중소기업의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기업주도형 R&D 과제기획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역량 기반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,
- 제한적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다변화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7. 토 론 요 지 : 생 략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